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무제한 설명회**  
**자료집**

2014. 3

# CONTENTS

---

## 01 |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주요 사항

- 1. 공천 기본 일정 [지역구] ..... 07
- 2. 기본자격심사 ..... 07
- 3. 후보자 선정방식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 08
- 4.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 [경선] ..... 09
- 5. 이의신청 및 제재 조치 ..... 10
- 6. 기타 주요 사항 ..... 11

## 02 | 새누리당 공천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상향식 공천 당헌 당규 Q&A) ..... 13

## 03 | 공천관련 당헌 · 당규 ..... 27

01

##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주요 사항

- 1. 공천 기본 일정 [지역구]
- 2. 기본자격심사
- 3. 후보자 선정방식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 4.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 [경선]
- 5. 이의신청 및 제재 조치
- 6. 기타 주요 사항

#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 주요 사항

## 1. 공천 기본 일정 (지역구)

- ① 공고 : 2. 28(금) ~ 3. 3(월)
  - ② 공모 : 3. 4(화) ~ 3. 15(토)
  - ③ 기본자격심사 : 3. 16(일) ~ 3. 23(일)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지실사, 심사용 여론조사 등
  - ④ 경선후보자 선정 : 3. 24(월) ~ 3. 30(일)
  - ⑤ 1차 경선 기간 : 3. 31(월) ~ 4. 6(일)
  - ⑥ 2차 경선 기간 : 4. 7(월) ~ 4. 13(일)
  - ⑦ 3차 경선 기간 : 4. 14(월) ~ 4. 20(일)
- ※ 4월 限 공천(경선) 종료예정.

## 2. 기본자격심사

절 차	평가 내용
①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자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규 상 부적격 기준 엄격 적용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li> </ul> </li> <li>■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인적사항, 범죄경력(본인 및 배우자), 학·경력, 세금납부, 병역, 재산, (상습적)당적변경(소위 철새정치인) 등 검증</li> <li>○ '자기검증진술서'를 통한 공직자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li> </ul> </li> </ul>
②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 출마의 변, 정견발표 능력, 지역현안 이해도, 선거전략 등</li> </ul> </li> </ul>
③ 현지실사 및 여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실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지역기반, 지역평판 및 활동현황 조사</li> </ul> </li> <li>■ 심사용 여론조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유권자 상대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등 조사</li> <li>○ 타당 유력 후보와의 가상대결 평가 등 후보경쟁력 검증</li> </ul> </li> </ul>
④ 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대 심사기준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선가능성(본선경쟁력), 도덕성(청렴성), 전문성(매니페스토),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 종합평가</li> </ul> </li> </ul>

### 3. 후보자 선정방식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 (1)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 개정 당헌·당규 취지에 따라 원칙적 전면 경선 실시
- 기본자격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선 후보자 선정
  -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 정수의 3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에 따라 4 ~ 5배수까지 선정 가능
  - 기초의원 : 정수의 2배수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3배수까지 선정 가능
  - 정수 압축은 기본자격심사, 여론조사 등 방법으로 함

#### (2) 여론조사 경선

-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이 가능함
- 조사의 변별력을 위해 정수의 3배수 이내로 후보자 선정
- 조사대상, 규모, 조사기관 수 등 세부 실시방식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에서 결정
- ※ 여론조사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한함

#### (3) 단수후보자 선정

- 기본자격심사 결과 종합, 아래와 같은 경우 단수후보자 선정
- ① 공천신청자가 1인일 경우
  - ※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수(이하같음)
- ②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복수의 공천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부적격 기준 등에 의한 공직후보자로서의 현격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4) '우선추천지역' 선정

-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선정권한
  - 중앙당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 시·도당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 ☞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후보자 선정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의 필수)

### 4.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 (경선)

#### ■ 선거인단 구성

##### A. 광역단체장

- (1) 선출방식 :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 80% + 여론조사 20%
- (2) 선거인단 규모 : 시·도 유권자수의 0.1% 이상
- (3) 선거인단 구성방식 :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준용

구분	대의원선거인(시도당대회)	당원선거인	국민선거인
구성비	선거인단총수의 2/8	선거인단총수의 3/8	선거인단총수의 3/8

- ① 대의원 선거인 : 시·도당대회 구성 기준 (시·도유권자수의 0.05% 이내)
- ② 당원 선거인 : 시·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당협별 배분)
  - 구성비율 : (책임당원 50%) + (추첨탈락 책임당원 + 일반당원 50%)
- ③ 국민선거인
  -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

##### (4) 투표반영 여론조사

- 여론조사 방식
  - 조사일시 : 표본크기에 따라 경선일 전일까지 1~2일간 실시
  - 조사대상 : 시·도 거주 유권자
  - 표본크기 : ex) 3,000개 (2개 기관, 각 1,500개)
  - 조사방법 : 직접 전화면접 여론조사
- 조사기관 추천
  - 매출액 순위 상위 10위권 이내 복수 기관

##### B.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 (1) 선거인단 규모

- ▶ 기초단체장 :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1,000인 이상
- ▶ 광역·기초의원 :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300인 이상
- ☞ 지역별 사정에 맞게 시·도당 공천관리위에서 적의 결정

## (2) 선거인단 구성방식

### ① 당원선거인

- ▶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2로 구성
- ▶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선거구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체
- ▶ 선거인단 규모에 따라 정수에 미달된 때에는 일반당원 중에서 추첨
- ※ 광역·기초의원 경선 선거인단은 당원선거인만으로 구성 가능

### ② 국민선거인

- ▶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1/2로 구성
- ▶ 당원이 아니면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
- 여성 50%, 만 45세 미만 30% 이상(단 군단위는 20% 이상) 비율 준수
-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
- 모집방법 : 외부 여론조사기관 의뢰, 전화면접 방식
- 미성년자, 당원, 공무원 등 경선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질문 문항에 포함)
- 지역별(읍·면·동별)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
- 성별·연령별 기준 적용

## 5. 이의신청 및 제재 조치

### ① 이의 신청

- 경선과정에서 불공정 사유 발생 시 후보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
- 이의 제기 절차
- ①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중앙당 공천관리위 접수
-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 산하‘이의신청심의소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심의
- ③ 소위원회는 접수 후 관련사항을 신속히 심의하여 공천관리위 회부
-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과 통지
- 기각 : 이의제기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
- 인용 :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제재조치

### ② 제재 조치

- 공모 마감 이후 ‘중앙당 클린공천감시단’ 운영
- 공천 또는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 사전 예방 활동 및 사안이 발생 시 신속한 사후 감찰 및 제재 조치
- 사안 발생 시 클린공천감시단 조사 후 공천관리위에 보고
- 공천관리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 의결
- 제재의 종류
- ① 주의 및 시정명령, ② 경고, ③ 윤리위 회부
- ※ 중대사안 발생 시 당 차원의 사정당국 직접 고발 조치
-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공천무효
- 특히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즉시 자격을 박탈·제명,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 금지

## 6. 기타 주요 사항

### ①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립의무

- 경선후보자 선거대책기구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 금지

### ②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별도 구성

-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위원 겸임 불가

02

# 새누리당 공천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정 상향식 공천 당헌 당규 Q&A)

## 새누리당 공천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Q1. '상향식 공천'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상향식 공천제도는 정당이 당원, 국민 등 유권자가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당의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수에 의해 공천권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되는 공천으로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공천을 말합니다. 후보자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선정하여 추천하는 과거 '하향식 공천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인식되어 미국 등 정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자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 있어 적용될 것입니다.

### Q2.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공천관리위')로의 명칭변경 배경은?

A.

상향식 추천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개정 당헌·당규의 취지에 따라 과거 공천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천관리위는 공직후보자를 공모하고, 기본적인 자격심사를 거쳐 상향식 추천방식에 따라 당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구입니다. 당헌 제103조에 의한 우선추천지역도 공천관리위에서 선정합니다. 당내 공직후보자 추천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이며, 공직후보자 당내경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를 선정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 Q3.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공천관리위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설치하고 당내외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되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 구성 시에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으며,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공천관리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월 27일 제 168차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 Q4. 공천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니까?

A.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정(비례대표 제외)은

- ① 공모→자격심사→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이하‘경선’) 또는 여론조사→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후보자 확정
  - ② 공모→자격심사→우선추천지역 선정→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 심의→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후보자 확정
  - ③ 공모→자격심사→단수추천→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후보자 확정
- 상황에 따라 ①, ② 또는 ③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공천관리위는 추천신청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의 부적격 기준은 Q23의 내용과 같습니다.
- 공천관리위는 자격심사를 거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경선을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천관리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1. 추천신청자가 1인(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법정후보자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인 경우
2.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법정후보자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3. 우선추천지역에 단수 후보자를 선정 한 경우(단, 이 경우 배심원단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 공천관리위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해야 하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확정된 공직후보자라 할지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협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당협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Q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후보자 신청 공고는 2. 28(금)부터 3.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 신청공고 후에는 공모절차를 3. 4(화)부터 3. 15(토)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 절차종료 직후, 공모에 응한 신청자들에 대한 기본자격심사(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지실사, 심사용 여론조사 등)가 3. 16(일)부터 3.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본자격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경선후보자 선정을 3. 24(월)부터 3. 30(일)까지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선거인단 구성, 선거운동 방법, 국가선관위 위탁신고 등경선 제반사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경선 준비가 완료되면 경선기간(1차 : 3. 31 ~ 4. 6, 2차 : 4. 7 ~ 4. 13, 3차 : 4. 14 ~ 4. 20)내에 경선을 진행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정은 시·도당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6. 기본자격심사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A.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기본자격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현지실사 및 심사용 여론조사→종합심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당규상 부적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적격자 심사를 하고, 신청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신청자의 정견발표 능력, 지역현안 이해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조직·지역기반, 지역평판 및 활동현황을 조사하고,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심사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의 인지도, 호감도, 지지도, 타당 유력 후보와의 가상대결 평가 등을 조사하고, 후보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가능성(본선경쟁력), 도덕성(청렴성), 전문성(매니페스트),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Q7.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기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경선후보자 등록→선거기간 및 선거일 공고→선거인단 명부 작성 및 확정→선거인단 명부 사본 교부→선거운동→투·개표 및 후보자선출대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 5일전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경선후보자 공고, 기호·정견발표 순서·현수막 게재순서 등 추천 등을 진행합니다.

선거기간은 명부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이고, 선거일 공고는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명부작성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게 되고, 이 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도당 선관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명단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각 후보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후 1일부터 선거전일까지로서, 선거운동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도당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39조에 규정된 사항 등은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선출대회 등을 개최하여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의 방식은 종이투표 또는 전자투표로서 1인 1표가 원칙이고, 투표시간은 시·도당 선관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가 발표되면 모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Q8. 경선에 있어서 명부작성 기준일이란 무엇이며, 책임당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A.

경선 선거인단에는 당원들이 50% 이상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당원 명부가 필요하고, 당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원명부 폐쇄일을 지정하여, 폐쇄일 이후 입당자에 대해서는 당원선거인 선정 자격을 배제하게 됩니다. 이 당원명부를 폐쇄한 날짜를 명부작성 기준일이라 합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명부 작성기준일을 후보자 공모 마감일인 3. 15(토) 24:00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원선거인 선정시 책임당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책임당원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책임당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연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또한 직책당원이 직책당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후납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번호변경, 계좌변경, 잔액부족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지 못해 책임당원 자격을 상실한 일반당원이 후납하는 경우 또한 책임당원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당원이 당비를 선납하였으나, 납부시점에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당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Q9. 당원선거인 구성시 책임당원만으로도 충분하면 일반당원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A.

당원선거인 구성시 책임당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 일반당원 중 추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당헌·당규에서는 선거인단 수의 하한선만을 규정(지역구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 지방의원 :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하고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당원은 전체를 포함하고, 필요할 경우 정수를 늘려 일반당원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Q10. 위탁경선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A.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규칙에 따라 선관위 위탁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선기간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15일 이내,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10일 이내에서 정당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기간은 10일 이내,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의 경우 6일 이내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선 위탁을 신청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경선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개시일 전 10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동시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Q11. 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하게 됩니까?

A.

경선 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당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을 하게 되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할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순회경선 실시 여부, 순회경선 일정, 권역 배분, 합동연설회 및 TV토론회의 개최 여부, 투표 및 개표 방식 등 순회 경선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 Q12. 경선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용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A. 선전벽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 홍보물은 당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수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형인쇄물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우편발송만 가능하며 이 경우 발송료는 선관위 위탁경선 시 당과 선관위가 균등히 분담합니다. 단 홍보물 제작 비용은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 Q13.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하며, 투표용지 인쇄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A. 투표소 설치를 비롯한 투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관할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되게 됩니다. 선관위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투표용지 인쇄 등 투표·개표와 관련된 사항은 투표·개표 사무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Q14. 여론조사경선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A.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거나, 경선후보자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합니다. 여론조사 경선비용은 경선참여 후보자간 동일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간 경선서면합의 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결과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 Q15. 모든 선거 후보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선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상향식 추천방식에 의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추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 ②복수의 신청자 중 1인(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공천관리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입니다. 또한 ③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경우에도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취약지역

에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선은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Q16. 공천 신청한 후보자가 모두 경선에 참여 하나요?

A. 공천관리위원회는 기본자격심사와 여론조사 등 경쟁력 조사를 통해 복수의 추천신청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경우 법정 후보자 정수의 3배수 이내(자치구·시·군의원 선거 경우 법정후보자 정수의 2배수 이내)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여론조사경선 포함)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단, 지역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 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Q17. 우선추천지역의 요건과 후보 추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거나,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하고 광역의원·기초의원의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합니다.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되면 단수의 후보자를 공천관리위의 심사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Q18.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일을 합니까?

A. 배심원단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합니다. 단, 당협위원장은 배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고, 배심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습니다. 중앙당 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 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합니다. 중앙당 배심원단은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의대상으로 하며, 시·도당 배심원단은 광역·기초의원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의대상으로 합니다. 배심원단은 각 심의대상인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천관리위가 지명한 1인은 배심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배심원단은 대상자를 출석시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19. 경선 또는 공천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A.**  
추천신청자는 경선과정에 있어 불공정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추천신청자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 및 제명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Q20.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A.**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천방식은 대통령 후보자 공천방식과 같습니다.  
단, 취약지역에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경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선 선거인단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의원 20%, 2. 당원 30%, 3. 국민 30%, 4. 여론조사 20%  
(자세한 내용은 당헌 제91조·제92조 참조)

**Q21.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서 모든 책임당원이 투표권을 갖습니까?**

**A.**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하면, 시·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당원 선거인, 일반국민 선거인, 여론조사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당원 선거인은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하여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추첨에서 탈락된 책임당원에서 25%, 일반당원 중에서 25%를 추첨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당원 전체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인단 수와 당협의 책임당원 수에 따라서 책임당원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22. 광역자치단체장 경선 선거운동 방법으로 합동연설회·토크쇼·토론회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습니까?**

**A.**  
광역단체장 경선 선거운동 방법은 당헌·당규 및 공천관리규칙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합동연설회·토크쇼·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23.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A.**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천방식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방식과 동일합니다. 먼저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추천 신청자들을 상대로 자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여 2명 이상의 경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합니다. 선거인단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상한선 없음)으로 하고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구성합니다. 이 중 당원은 책임당원 전원을 포함토록 하고, 공천관리위가 정한 정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국민선거인은 당원이 아닌 국민 중에 공모에 응한 자로 하되,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에 있어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시 단위는 만 45세 미만 30% 이상, 군 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적격 기준(11가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 ①피선거권 없는 자 ②2개 이상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③당적 이탈 또는 변경자 ④이중 당적 보유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인 자 ⑥신청 서류 허위사실 기재자 ⑦파렴치범죄 전력자 ⑧부정비리관련자 ⑨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⑩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⑪기타 추천 부적합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 Q24.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경선을 꼭 1회에 치러야 하나요?

A.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경선의 횟수는 지역의 면적, 인구 규모, 교통 환경 등 사회적 환경과 경선 효과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Q25.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상향식 공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합니까?

A.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방식은 Q23에서 설명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공천방식과 동일합니다. 단,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 제외)별 관할 광역 또는 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는 경선 선거인단 구성 시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상한선 없음)으로 하고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구성합니다. 이 중 당원은 책임당원 전원을 포함토록 하고, 공천관리위가 정한 정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천하여 선정합니다.

국민은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이 있는 일반 국민 중에 공모에 응한 자로 하되,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에 있어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시 단위는 만 45세 미만인 30% 이상, 군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Q26. 지방의회의원 경선시 당원선거인만으로 경선이 가능합니까?

A.

지방의원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을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으로 하고,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구성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 경선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아서, 국민선거인 모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여론조사로 갈음하고자 하여도 지방의원 경선 후보자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낮거나 변별력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원선거인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Q27. 기초의회의원의 기호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공직선거법 제150조제7항에서는 기초의원의 기호 배정을 후보자 추천 정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기호 배정은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Q28.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A.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시·도당 공천관리위(또는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심사를 거쳐 시·도당 운영위의 의결 후, 시·도당 배심원단의 심의 및 최고위 의결을 거쳐 추천대상으로 확정합니다. 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 및 배심위원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규정된 부적격자 기준에 따라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 Q29.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여성 의무공천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A.

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별 지방의원 공천 후보자수가 의원정수의 1/2 이상일 경우,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 전원의 등록이 무효가 되므로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지역이거나, 자치구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03**

**공천관련 당헌·당규**

### 당헌

#### 제3장 당기구

##### 제10절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 48 조 (구성)**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역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⑤ 제4항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공천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⑧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9 조 (기능)**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3. 당 소속 각종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선정
4. 우선추천지역 선정

② 제1항제1호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97 조 (후보자 추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 방식을 통해 추천한다.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98 조 (국민공천배심원단)**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둔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중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회의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중 다음 3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한다.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2.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3. 시·도회의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 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9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0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에서 지역 및 직역별로 공모를 실시한 후,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당해 선거의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그 순서는 성별 교차식으로 한다.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1 조 (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①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② 시·도지사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제91조 내지 제92조의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거인단은 시·도 선거인단으로 하며,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2 조 (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 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

④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 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3 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단,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하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4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101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 규

##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제10절(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라, 공직후보자(대통령후보자 제외)의 추천·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상의 독립)** 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안건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사 중에 알게 된 일체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구성 및 운영

**제 4 조 (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구성을 완료한다. 다만, 재 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은 총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다.

**제 5 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권한)**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6장(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추천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103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등)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공모 및 각 선거별선거인단대회 등을 포함하는 선출과정 전반의 사무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 관련부서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7 조 (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기준)**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1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101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10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의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10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의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심의 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개별 면접을 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 여론조사, 면접 및 후보자간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 10 조 (재의결)** 위원회는 당헌 제48조(구성)제4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당헌 제48조(구성)제5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위원회 구성) 제1항 및 제2항과 제5조(위원장·부위원장)를 준용한다.  
③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권한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7조(소집 및 의사), 제8조(심사기준), 제9조(심의 등) 및 제10조(재의결) 등을 준용한다.

### 제 3 장 보 칙

**제 12 조 (위임규정)**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척)** ① 공직후보 공모에 신청한 위원은 당해 지역의 해당 공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4 조 (간사 및 실무지원부서)** ① 대표최고위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간사는 지정된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실무 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 대외비로 보관한다.

## 공직후보자추천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99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1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제101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제102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103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및 제104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 규정된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추천절차)** 공직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제 2 장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제 3 조 (자격)**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다만, 당헌 제103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 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위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공모)** ①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이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라 함. 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공모일과 기간을 정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모개시일 전 3일부터 중앙당, 시·도당(국회의원사무소 포함)의 게시판 및 당 홈페이지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후보자 추천신청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 관련부서 및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신청)**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제출서류)**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후보자 추천 신청서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3. 서약서
4.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
5.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6. 이력서 2통
7.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8.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9. 재산보유현황서
10. 병적증명서 1통
11.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1통
12.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1통
1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주민등록초·등본 각1통
1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15. 사진 3매
16. 기타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지정서류

**제 7 조 (추천신청자 공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지체 없이 중앙당, 시·도당(국회의원사무소 포함) 게시판 및 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후보 추천신청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 8 조 (자격심사)**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위원회’라 한다)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이 반영된 자격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모가 완료된 후 추천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량적인 심사지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2

인 이상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여론조사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을 통해 단수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10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지역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신청자가 1인이거나(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를 말함)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법정 후보자 정수와 동수 또는 미달된 수를 말함)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와, 당헌 제103조(우선추천지역 선정 등)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우선추천지역에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단, 우선추천지역의 경우에는 당헌 제98조(국민공천배심원단)에 따라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⑥ 위원회는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치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다.

⑦ 시·도당 위원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당해 시·도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⑧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한다. 단,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인재영입위원장은 인재영입과 관련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조 (부적격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3.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4.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6.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7.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8.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9.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 10.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 11.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 제 4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0 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 공직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시·도당에 시·도당 공직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1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겸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선거구로 결정한 곳의 후보자 등록
  2. 선거인단 명부 작성
  3. 투·개표 등 선거관리 업무
  4. 선거관련 유권해석
  5. 선거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기타 선거에 관련한 제반사항
-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통할·관리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5 장 국민공천배심원단

**제 13 조 (구성)**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헌 제98조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다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배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 선정, 방식, 절차 등 구성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

며,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 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비례대표공천위원 포함)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각급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⑤ 국민공천배심원단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인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능)** ①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 시군의 장 후보자중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중 다음 3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한다.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2.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후보자
  3.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장·부위원장)**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두며,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둔다.

**제 16 조 (소집 및 의사)** ①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에서 요청한 때 소집한다.

②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심의 등)** ① 국민공천배심원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명한 1인은 배심원단 회의에 출석하여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자를 출석시켜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천심사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후보자적격여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심의한 결과를 최고위원회의 및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대표최고위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 6 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 18 조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이하 '경선'이라 한다)의 후보자는 공직후보 추천신청자중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의 후보자(이하 '경선후보자'로 한다)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중앙당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 19 조 (경선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① 경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각급 선관위는 규칙에 정하는 대로 제재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 20 조 (경선후보자 등록)**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일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제 21 조 (경선후보자 사퇴)**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경선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1. 당원선거인
2. 국민선거인

**제 23 조의 2 (당원선거인)** 당원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제 23 조의 3 (국민선거인)** ① 국민선거인 정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총수의 2분의 1로 하며,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이 있는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복합 선거구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④ 국민선거인은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는 45세 미만이 30%이상, 군 단위는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 24 조 (명부작성 및 확정)** 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제23조에 해당하는 자로 선거인단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이하 '선거인단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단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단명부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선거인단명부의 작성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 25 조 (명부 사본의 교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사본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선거기간 만료일 즉시 그 명부를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일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7 조 (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출되거나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단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전일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방법 및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8 조 (공직후보자의 추천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의 결과를 존중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선거운동이나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제8조(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공직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45일까지 후보자추천을 완료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에 있어 공직후보 추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추천자를 의결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 29 조 (재의결)**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48조(구성)제4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당헌 제48조(구성)제5항의 규정에 의해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 7 장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 30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대상이 된다.

1.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공모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자격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

2. 최고위원회의의 추천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포함)의 자격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1 조 (자격심사)**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제8조(자격심사) 내지 제9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

**제 32 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포함)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정수 내에 해당하는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을 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는 제14조제1항의 1호에 해당하는 추천대상자에 대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최고위원회의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번에 대해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최고위원회의가 부결할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제 8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제 33 조 (후보자의 추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후보자의 추천방법은 당헌 제91조(후보자선출) 내지 제92조(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에 규정된 대통령후보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은 국민참여시·도선거인단으로 한다.

**제 34 조 (국민참여 시·도선거인단 구성)** 국민참여 시·도선거인단은 당해시·도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하고, 선거인단의 구성방식은 대통령후보선출 선거인단의 구성방식을 준용한다.

## 제 9 장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

**제 35 조 (후보자의 추천)** ①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방법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제6장(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추천)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이경우 선거인단은 국민참여 자치구·시·군선거인단으로 한다.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의 추천을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45일까지 완료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36 조 (국민참여 자치구·시·군 선거인단 구성)** 국민참여 자치구·시·군 선거인단은 해당 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준용하되,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 제 10 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 37 조 (후보자의 추천)** ①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방법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제6장(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에 규정된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선거인단은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선거인단으로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군지역 제외, 자치구 일부지역이 타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해 한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 일부지역 제외)별로 관할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당해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완료한다. 다만, 재·보궐선거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38 조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선거인단 구성)** ①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선거인단은 해당 지역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준용하되, 선거인단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국민참여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선거인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 2에 따른 당원 선거인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 11 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추천

**제 39 조 (공모 등)**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는 제3조(자격) 내지 제6조(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한다. 다만,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시·도당 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0 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대상)** 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대상이 된다.

②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공천위원회’ 포함) 위원으로 참여한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1 조 (자격심사)** ①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제8조(자격심사) 내지 제9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 조 (추천대상자의 확정)**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 추천대상자의 확정은 제32조에 규정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추천대상자의 확정방식을 준용한다.

## 제 12 장 보칙

**제 43 조 (추천장 교부)** 공직후보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추천장을 교부한다.

**제 44 조 (이의신청의 금지)** 추천신청자는 이 규정에 의한 추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8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선과정에 불공정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45 조 (제재규정)** ①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당해 선거구의 공직후보 추천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해당 행위를 할 때에는, 사무총장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특히, 경선에 불복하고 당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공직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을 금지한다.

② 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제명하고 당원규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 추천을 금지한다.

**제 46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 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선거의 후보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7 조 (지원부서)** 대표최고위원은 추천신청자의 추천에 관한 제반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 48 조 (위탁경선 실시규정)**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위탁경선을 실시할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경선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9 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